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17
----------	-------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최종윤 · 허 영 · 조오섭
박광온 · 최혜영 · 오영환
도종환 · 한정애 · 기동민
고영인 의원(10인)

제안이유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음.

그런데 개발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구역 정비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위례신도시’라고 불리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은 행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으로 구분되고 있는 반면, 법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성남시 창곡동 관할로서 동일한 행정동 상에서 법정관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하남시 관할의 위례신도시 지역은 송파구와 사실상 단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다른 위례신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 규모와 면적이 작아 교통망 이용과 공공기관 접근성 등에 있어 각종 불편함이 집중되고 있음.

이에 하남시에 속한 위례신도시 지역을 지리적·경제적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위례신도시의 생활권에 속한 경기도 하남시 일부 지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기도 하남시 관할 행정구역 중 하남시 조례로 위례동으로 정하는 지역 일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고, 해당 지역을 하남시 관할에서 제외함(안 제2조).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례신도시의 생활권에 속한 경기도 하남시 일부 지역(이하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지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변경 등) ① 경기도 하남시 관할 행정구역 중 하남시 조례로 위례동으로 정한 지역 일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한다.

②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라 송파구의 관할로 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송파구에 속하게 되는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하남시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규칙 중 경기도·하남시 또

는 그 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송파구 또는 그 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경기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장이 하남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송파구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 하남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고시·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송파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 하남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송파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하남시의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송파구에 속하게 되는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말한다) 또는 송파구청장과 하남시장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이 법에 따라 송파구에 속하게 되는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라 송파구에 속하게 되는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지역을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법령·규정 중 경기도·하남시 또는 그 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송파구 또는 그 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송파구에 속하게

되는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서울특별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송파구에 속하게 되는 하남시 내 위례신도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해당 지역에 적용한다.